

의안번호	2215889
의 퇴 인	김현정의원
회 답 일	2026.6.12.
추계번호	26D005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군무원(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과 보국수훈자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추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총 222억 1,100만원(연평균 44억 4,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연평균
안장 대상자 확대(안 제5조)	3,929	4,226	4,563	4,601	4,892	22,211	4,442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제1항(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에 군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 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정년퇴직한 사람에 한정함)과 「상훈법」 제15조에 따른 보국훈장을 수여 받은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함	의무규정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제1항(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0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는 군무원 퇴직자 현황 정보 등을 제공하는 「2024년도 공무원 연금통계」와 국가보훈부와 행정안전부의 보국수훈장을 받은 사람 수(이하 “보국수훈자”로 지칭함)에 기초하여 개정안에 따른 안장 대상자를 산출
- 군무원 현황을 고려하여 성별은 남성, 평균 입직연령을 30세로 가정¹⁾하여 연령이 1세 늘어남에 따라 재직기간이 1년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함
 - 기 퇴직자의 경우, 60세 이상 연령별 연금수급자 수에 정년퇴직자 비율과 국가데이터처의 연령별 사망률을 적용하여 향후 사망자 수를 추정함
 - 신규퇴직자의 경우, 2024년 60세 퇴직자 수에 30세 이전 신규가입자 비율 54.8%와 국가데이터처의 장래 연령별 사망률을 적용하여 향후 사망자 수를 추정
- 연령별 보국수훈자 수를 고려하여, 성별은 남성²⁾으로 가정하고 국가데이터처의 장래 연령별 사망률을 적용하여 향후 사망자 수를 추정함
 - 기 보국수훈자의 경우,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보국수훈자의 연령별 현황자료를 활용하되, 행정안전부의 보국수훈자 수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인원간의 비율을 고려하여 보정함
 - 신규 보국수훈자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최근 3년간 연령별 평균 보국수훈자 수 만큼 추계 기간 신규 보국수훈자 수로 가정함
- 개정안에 따른 안장 대상자는 국립묘지 안장을 100% 선택하는 것으로 가정
 -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중 실제 안장을 신청하는 비율이 대상자의 직종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는데 군무원과 보국수훈자의 안장률을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
 - 이에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서 규정한 안장 대상자 전원이 국립묘지 안장을 선택하는 것으로 가정

1) 「2024년도 공무원연금통계」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군무원의 76.1%가 남성이고 신규 군무원의 평균 연령은 31.7세이며, 30세 이전 신규가입자 비율이 54.8%임. 「2021년도 공무원연금통계」에 따르면, 신규 군무원의 평균 연령은 30.3세로 최근 신규가입 연령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2) 국가보훈부의 보국수훈자 등록인원 중 97.7%가 남성임

- 개정안에 따른 안장 대상자 증가로 인한 안장단가는 국립연천현충원 기준 안장단가를 적용함
 - 국가보훈부는 국립현충원과 국립호국원의 안장단가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어, 국립현충원 안장대상과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을 구별하지 않음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함³⁾
- 개정안은 부칙 제1조에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조에서 법 시행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8년부터 사망하는 군무원을 추계대상으로 하며, 추계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안장대상 확대

(1) 신규 안장 대상자 수: 군무원

- 개정안에 따른 안장 대상자는 군무원으로 퇴직 후 연금수급을 하고 있는 기수급자와 향후 퇴직하는 신규 퇴직자로 구분하여 추계
 - 개정안에 따라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자로 추가되는 사람은 재직기간 30년 이상 대상자 중 정년퇴직한 사람으로 한정
- 기수급자 중 개정안에 따른 안장 대상자는 재직기간 30년 이상이면서 정년퇴직한 경우로, 추계기간 824명으로 추정
 - 2024년말 기준 기수급자 중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60세 이상 연령별 수급자 수에 정년퇴직자 비율과 국가데이터처의 장래 연령별 사망률을 적용하여 향후 사망자 수를 추정함
 - 2024년 말 기준 기수급자 중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60세 이상의 기수급자 수에 연도별 남성 사망률(국가데이터처 자료)을 적용하여 산출한 후 정년퇴직자 비율 49.8%⁴⁾를 적용하여 산정함

3)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6.3)

	2026	2027	2028	2029	2030	3031	2032
소비자물가상승률(%)	2.0	2.0	2.0	2.0	2.0	2.0	2.0

[표 2] 기 수급자 중 국립호국원 추가안장대상자 추정: 2028~2032년

(단위: 명)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군무원(30년 이상, 정년퇴직자)	151	162	173	175	164	824

주: 1. 2024년 말 기준 연령별 기수급자 수(공무원연금공단, 「2024년도 공무원연금통계」)에 국가데이터처의 장래 연령별 남성 사망률을 적용하여 연도별 기수급자 수를 산출한 후 전년 대비 감소 인원을 사망자 수로 간주

2. 단수 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신규 퇴직자 중 개정안에 따른 안장 대상자는 재직기간 30년 이상이면
서 정년퇴직한 경우로, 추계기간 38명으로 추정

- 「2024년도 공무원연금통계」 기준 신규 퇴직자 중 재직기간 30년 이상 퇴직자 중 국가데이터처의 장래 연령별 사망률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정년퇴직자 비율을 적용

[표 3] 신규 연금 수급자 중 국립호국원 추가 안장대상자 추정: 2028~2032년

(단위: 명)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군무원(30년 이상, 정년퇴직자)	4	6	8	10	12	38

주: 1. 2024년 말 기준 연령별 신규 퇴직자 수(공무원연금공단, 「2024년도 공무원연금통계」)에 국가데이터처의 장래 연령별 남성 사망률을 적용하여 연도별 기수급자 수를 산출한 후 전년 대비 감소 인원을 사망자수로 간주

2. 단수 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기수급자와 신규수급자를 합한 추가 안장대상자 수는 아래 표와 같음

[표 4] 군무원 추가 안장대상자 추정: 2028~2032년

(단위: 명)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기수급자	151	162	173	175	164	824
신규수급자	4	6	8	10	12	38
합계	155	167	181	184	175	862

주: 1. 2024년 말 기준 연령별 기수급자 수(공무원연금공단, 「2024년도 공무원연금통계」)에 국가데이터처의 장래 연령별 남성 사망률을 적용하여 연도별 기수급자 수를 산출한 후 전년 대비 감소 인원을 사망자수로 간주

2. 단수 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2024년도 공무원연금통계」에 따르면, 공무원 퇴직연금수급자 총 602,861명 중 정년퇴직자는 300,433명으로 49.8%임

(2) 신규 안장대상자 수: 보국수훈자

- 개정안에 따른 안장 대상자는 「상훈법」 제15조에 따른 보국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으로서 기 보국수훈자와 신규 보국수훈자로 구분하여 추정
- 기 보국수훈자의 경우,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생존 보국수훈자 연령별 인원⁵⁾에 생존 여부 상관없이 전체 보국수훈자 중 등록자수 비율로 보정⁵⁾한 결과, 추계기간 안장 대상자는 5,443명으로 추정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기 보국수훈자의 연령별 인원⁵⁾에 국가데이터처의 장래 연령별 사망률을 적용하여 안장대상자를 추정

[표 5] 기 보국수훈자 중 국립호국원 추가 안장대상자 추정: 2028~2032년

(단위: 명)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기 보국수훈자	1,089	1,102	1,119	1,057	1,076	5,443

주: 1.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연령별 생존 보국수훈자에 국가데이터처의 장래 연령별 남성 사망률을 적용하여 연도별 기 생존 보국수훈자 수를 산출한 후 전년 대비 감소 인원을 사망자 수로 간주
 2. 단수 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신규 보국수훈자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최근 3년간 연령별 평균 보국수훈자 수를 추계 기간 매년 신규 보국수훈자 수로 가정하여 추정한 결과, 추계기간 안장 대상자는 168명으로 추정
 - 매년 연령별 보국수훈자 수에 국가데이터처의 장래 연령별 사망률을 적용하여 향후 사망자 수를 추정함

[표 6] 신규 보국수훈자 중 국립호국원 추가 안장대상자 추정: 2028~2032년

(단위: 명)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신규 보국수훈자	16	25	33	42	51	168

주: 1. 최근 3년간 평균 연령별 보국수훈자 수에 국가데이터처의 장래 연령별 남성 사망률을 적용하여 연도별 생존 보국수훈자 수를 산출한 후 전년 대비 감소 인원을 사망자 수로 간주
 2. 단수 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5) 보국수훈자의 경우, 행정안전부는 수여 당시 생존여부 및 연령만 확보하고 있고 추후 사망 여부는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국가보훈부는 보국수훈자 중 등록자만 관리하고 있어, 현재 국가보훈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망할 경우 개정안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음

□ 기 보국수훈자와 신규 보국수훈자를 합한 추가 안장대상자 수는 아래 표와 같음

[표 7] 보국수훈자 추가 안장대상자 추정: 2028~2032년

(단위: 명)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기 보국수훈자	1,089	1,102	1,119	1,057	1,076	5,443
신규 보국수훈자	16	25	33	42	51	168
합계	1,106	1,126	1,152	1,099	1,127	5,611

주: 1. 2024년 말 기준 연령별 기수급자 수(공무원연금공단, 「2024년도 공무원연금통계」)에 국가데이터처의 장래 연령별 남성 사망률을 적용하여 연도별 기수급자 수를 산출한 후 전년 대비 감소 인원을 사망자수로 간주

2. 단수 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전체 신규 안장 대상자

□ 추계기간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군무원 사망자 수와 보국수훈자 사망자 수를 합한 추가 안장대상자 수는 아래 표와 같음

[표 8] 추가 안장대상자 추정: 2028~2032년

(단위: 명)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군무원(30년 이상 정년퇴직자)	155	167	181	184	175	862
보국수훈자	1,106	1,126	1,152	1,099	1,127	5,611
합계	1,260	1,294	1,334	1,284	1,302	6,473

주: 1. 2024년 말 기준 연령별 기수급자 수(공무원연금공단, 「2024년도 공무원연금통계」)에 국가데이터처의 장래 연령별 남성 사망률을 적용하여 연도별 기수급자 수를 산출한 후 전년 대비 감소 인원을 사망자수로 간주

2. 단수 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안장단가

□ 개정안에 따른 국립묘지의 안장비용과 묘지조성비 단가는 다음과 같이 추정함

○ 안장비용: 2025년 안장비용 단가(140천원)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 상승률⁶⁾을 적용하여 추정

6) 소비자물가상승률(2025.7.)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소비자물가상승률(%)	2.0	2.0	2.0	2.0	2.0	2.0	2.0

[표 9] 1인당 안장비용: 2025년 기준

(단위: 천원)

구분	유골함	봉안명패	합계
단가	90	50	140

주: 유골함은 봉안당 기준이며, 봉안명패는 부부 동시합장 기준임

자료: 국가보훈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묘지조성비: 2025년 기준 국립연천현충원의 묘지조성비 단가(2,572천원)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표 최근 10년 건설공사비지수 연평균 상승률⁷⁾을 적용하여 추정

[표 10]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 개요: 2025년 기준

- 사업위치: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산 120번지 일원
- 부지면적: 957,570㎡(29만평)
- 조성규모: 5만기 봉안시설(봉안당 2만5천기, 봉안담 2만기, 자연장 5천기)
- 사업기간: 2019~2027년
- 총사업비: 128,607백만원(보상비 16,764백만원, 설계비 6,527백만원, 공사비 100,079백만원, 감리비 5,006백만원, 부대비 231백만원)

자료: 국가보훈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추계기간의 안장비용과 묘지조성비를 합한 국립묘지 안장단가는 아래 표와 같음

[표 11] 국립묘지 안장단가 추정: 2028~2032년

(단위: 천원)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안장비용	149	152	155	158	161
묘지조성비	2,969	3,114	3,267	3,427	3,595
합계	3,118	3,266	3,422	3,585	3,756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군무원(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과 보국수훈자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추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총 222억 1,100만원(연평균 44억

7) 건설공사비지수(2025.9)

구분	2016.1	2020.1	2021.1	2022.1	2024.1	2025.1	연평균 증가율
건설공사비지수	85.27	104.07	119.77	127.1	129.77	131.03	4.9%

4,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2]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연평균
안장인원(명)	1,260	1,294	1,334	1,284	1,302	6,473	1,295
안장단가(천원)	3,118	3,266	3,422	3,585	3,756	—	—
추가재정소요(백만원)	3,929	4,226	4,563	4,601	4,892	22,211	4,442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2024년 기준 공무원연금 통계자료와 행정안전부 및 국가보훈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개정안에 따른 군무원과 보국수훈자 사망 시 국립호국원의 추가 안장 대상자 수를 산출하였으며, 안장 대상자는 국립묘지 안장을 100% 선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국립연천현충원 기준 묘지조성비 단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